

서비스貿易과 그 類型

金 宇 圭*

-
- I. 序 論
 - II. 서비스의 概念
 - III. 서비스貿易의 意義와 類型
 - IV. 結 論
-

I. 序 論

國際交易量의 增加에 따라 서비스貿易에 대한 比重도 점차 커지고 있다. 우루파이라운드의 協商議題중 農產物, 纖維와 아울러 핵심분야로 서비스貿易에 대한 새로운 規範이 制定되었다. 이는 各國의 經濟構造가 소프트化 내지 서비스化됨에 따라 발생한 결과로서, 이는 서비스部門의 경제화 경향에 기인된다. 이와함께 서비스貿易에 있어 技術集約的인 서비스에 대하여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先進國과 勞動集約的인 서비스에 대하여 比較優位를 가지고 있는 開發途上國間에 立場差異가 있다.

서비스貿易去來에 대한 韓國의 위치는 先進國에 대하여는 課稅價格適用에 있어 積極的인 立場인 反面, 相對國은 그 反對이다.

본 고에서는 서비스貿易에서 발생하는 國際去來의 여러 문제 등을 생략토록 하고, 단지 서비스와 서비스貿易의 概念을 中心으로 考察하고, 아울러 서비스貿易의 類型을 紹介하는 것에 限定토록 한다.

* 關稅廳 釜山稅關 通關局長.

II. 서비스의 概念

1. 서비스의 定義

서비스는 財貨와 더불어 人類의 經濟生活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에 따라 서비스의 種類와 對象은 多樣化되었고, 시대의 变遷과 더불어 學者에 따라서 見解도 달리 하였다.

아담스미스는 財貨에는 永續性이 있으나 서비스에는 永續性이 없고, 서비스의 行爲는 행해지자마자 消費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¹⁾ 힐(T.P. Hill) 또한 財貨와 서비스를 區別하여 定義내렸다. 그는 財貨를 '轉用할 수 있고, 따라서 經濟單位들 간에 속하는 사람 혹은 물건의 狀態變化인데, 이는 前者的 동의를 가진 다른 經濟單位의 活動에 의해 發生하는 것'이라고 定義하였다.²⁾

그외 사피르(A. Sapir)는 서비스를 '無形(intangible) 혹은 比貯藏物(non-storable output)을 생산하는 활동'³⁾으로, 리들(D.I. Riddle)은 '서비스란 그 자체가 변화하거나 이를 제공받는데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時間(time), 空間(place) 및 定型의 便益(form utility)을 제공하는 經濟的 活動(economic activities)'⁴⁾라고 定義하였으며, 日本의 하타(羽田昇史)는 서비스를 '利用可能한 여러 資源(人, 物, 시스템)이 有用한 機能을 發生시키는 活動'⁵⁾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自由貿易을 위한 國際規範으로서 역할을 해 오고 있는 GATT는 서비스를 '農業과 工業部門을 제외한 모든 經濟的 活動'으로 定義하고 있으며, 美國은 GATT 提出用 國別報告書에서 서비스를 狹義의 서비스와 廣義의 서비스로 分類한 후에 '無形의in 財貨를 산출하는 모든 產業'을 狹義의 서비스로, '農·水產業, 鑛業 및 製造業을 제외한 모든 事業'을 廣義의 서비스로 定義하고 있

1) 박명섭 譯, 《자나미요오코/우라다슈지로, 서비스 貿易-理論·現象·課題-》, 比峰出版社, 1993, p.15.

2) T.P. Hill,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3, 1977, pp.315~338.

3) A. Sapir, "North-South Issues in Trade in Services," *The World Economy*, 1985, p.28.

4) D.I. Riddle, "Service-Led Growth," *Journal of Marketing*, vol.41, 1987, p.194.

5) 羽田昇史, 『サービス經濟學入門』, 同文館, 1993, p.50.

다. 日本은 GATT 提出用報告書에서 '3次產業에서 전력, 가스, 수도를 除外한 모든 產業'을 서비스로 定義하고 있다.

2. 서비스의 分類 및 特性

서비스의 分類方法을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⁶⁾

學者	分類基準	分類	主要內容
엘프링	서비스가 提供하는 業務나 活動	生産者서비스	中間投入財的 要素 서비스: 금융·보험, 부동산업, 사업 및 전문서비스업 등
		流通서비스	流通 및 運送關聯 서비스: 도·소매업, 운수업, 통신업 등
		個人서비스	消費者關聯 서비스: 음식 및 숙박업, 이·미용업, 가사서비스업 등
		社會서비스	公共材的 서비스: 공공행정·국방, 의료보험, 교육 등
그루벨과 위커	支出	消費者서비스	消費者購買서비스(엘프링의 個人서비스): 호텔, 금융·보험업, 이·미용업 등
		生産者서비스	要素 및 中間投入서비스: 회계, 광고, 정보·통신 등
		政府서비스	公共部門 서비스(엘프링의 社會서비스): 교육, 의료, 보건, 국방, 치안 등
하타	賣買對象	物的서비스	物資賣買手段 서비스: 임대 및 리스, 오락·게임업 등
		人的서비스	人間行爲關聯 서비스: 가사서비스, 의료서비스, 이·미용업 등
		시스템的 서비스	組織化된 制度的 서비스: 정보·통신업·보험업 등
힐	影響을 미치는 對象	財貨에 影響을 미치는 서비스	中間投入性格 서비스: 금융, 수리, 컨설팅서비스 등
		사람에 影響을 미치는 서비스	消費者 物理的·心理的 狀態관련 서비스: 여객운송, 의료, 교육, 통신 등

6) T. Elfring, "New Evidence on the Expansion of Service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 1989, pp.409~440; H. Grubel and M.A. Walker, "Modern Service Sector Growth: Causes and Effects," in H. Giersch(ed.), *Services in World Economic Growth*, Tübingen: Kiel University, 1989, pp.5~23; 羽田昇史, 前掲書, 1993, p.44; T. Hill, *op. cit.*, 1977, pp.328~330.

서비스의 特性으로는 그것이 生產되는 同時に 消費가 이루어지고, 이같은 特性에 의해 항상 生產되는 것과 同時に 消費가 이루어지며, 生產者와 消費者가 같은 장소에서 去來를 행하는 점이다. 이런 면에서 서비스의 基本的 特性을 보면 無形性(intangibility); 서비스는 物의財貨의 形態에 물리적 변화를 일으켜 便益과 滿足을 줄 수 있는 行爲, 움직임, 機能 등으로 파악되어 固定的인 形態를 가지고 있지 않다. 서비스가 이처럼 無形의 것이라는 性質은 서비스가 가지는 가장 基本的인 特徵으로서 財貨와 명확한 구분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서비스는 無形의 商品이기 때문에 消費者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規格化가 곤란한 관계로 서비스의 내용이 變質되기 쉬운 경향이 있어 消費者가合理的인 選擇行動을 하는데 커다란 障碍가 된다

貯藏不可能性(non-storability); 서비스의 경우 在庫가 不可能하다는 점은 많은 사람들에 의해 지적되어 왔으며, 이 때문에 計劃生產이나 注文生產을 하여야 한다. 航空券, 鐵道乘車券, 호텔客室, 病室 등을 豫約하는 경우를 보면 서비스도 貯藏(在庫)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는데, 이는 염밀하게 말하자면 서비스의 豫約 스톡이지 서비스 自體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서비스材의 스톡은 아니다.

消滅性(perishability); 서비스는 어느 일정 시간동안 存立하였다가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서비스는 '豫約'의 전매는 可能하나, 전매 그 自體는 서비스로서 成立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서비스의 結果는 서비스對象인 '財'의 變化로서 남으나 서비스 自體는 一過性으로 인해 消滅되어 버리는 消滅性을 동시에 가진다.

不可逆性(irreversibility); 財貨의 경우 전매하는 것과 함께 본래의 販賣人에게 還買하는 경우도 있고, 때로는 거래가 없었던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다. 그러나 서비스의 경우는 한번 제공되면 이를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不可逆性을 가진다. 旅客運輸(passenger transportation)의 경우 원래의 상태로 되돌리거나 또는 반복적인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하다. 이는 旅客運輸의 서비스를 두 번 제공한 것이지 원상태로 되돌린 것으로 보는 것은 부적당하다.

認識의 困難性(irrecognitionability); 서비스는 앞에서 언급한 無形性, 一過性, 消滅性 등으로 인해 認識하기에 힘든 특징이 있다. 즉 서비스는 供給者로부터 提供받기 전에는 그 질을 認識하기 곤란하다. 예를 들면 醫療 서비스, 호텔서비스, 映畫上映 등에서 消費者가 미리 그 서비스의 질을 어느 정도까지 認識可能

한지가 문제이다. 물론 財貨의 경우에도 技術水準 및 品質의 우수성 등을 식별하기 困難한 점이 있으나, 서비스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認識이 더 困難하다는 데에는 異見이 없다.

III. 서비스貿易의 意義와 類型

1. 서비스貿易의 概念

財貨의 國際間 去來란 商品이 一國에서 他國으로의 販賣라고 말할 수 있다. 즉, 어떤 財貨에 대한 所有權의 移轉은 그 財貨가 물리적으로 국경간 이동을 隨伴할 때 발생한다. 그리하여 國境間 移動이 財貨貿易의 必要充分條件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서비스貿易의 정의는 보다 다양하다. 이는 서비스의 國際間 去來形態가 다양하기 때문이다. 페케테쿠티(G. Feketekuty)는 서비스貿易을 '서비스 輸出國에서 金融, 資本, 情報, 財貨의 가치를 높여주는 서비스가 附加되는 경우'라고 정의하였으며,⁷⁾ 스텐과 호크만(R.M. Stern & B.M. Hoekman)은 '국내의 生産요소가 그 서비스활동의 대가로 非居住者(non-residents)로부터 수입을 발생시키는 行爲'⁸⁾라고 정의하여 이것은 서비스의 國際貿易可能性을 國境概念에서 보다 광범위한 居住者와 非居住者 사이의 去來概念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미 타결된 UR에서 합의된 서비스協定(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 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上에 나타난 서비스貿易의 形態는 4 가지로 구분되는데 여기에는 商品의 國境間 輸出入과 같은 生產物의 國境間 移動 뿐만 아니라, 消費者의 移動, 生產要素의 移動에 의한 서비스供給을 모두 포함한다.⁹⁾ 한편, IMF는 서비스貿易을 다음과 같이 4 가지로 나누어 定義하고 있다.¹⁰⁾

7) G. Feketekuty,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3, 1977, pp.317~318.

8) R.M. Stern and B.M. Hoekman, "Issues and Data Needs for GATT Negotiations on Services," *The World Economy*, Vol.10, No.1, 1987, p.42.

9) 對外經濟政策研究院, UR 總點檢, 1993, pp.331~332.

(1) 狹義의 定義

좁은 의미에서 서비스의 輸出과 輸入은 관현서비스가 실지로 國境을 넘나드는 곳에서 國內居住者와 非居住者間의 非서비스去來를 말한다. 전형적인 예로서 航空 및 海上運貨, 保險, 海外旅行을 위한 旅客運貨, 再保險, 로열티, 契約者費用, 通信 등이다. 이 定義는 國內企業의 外國支社나 外國企業의 國內支社에 의한 모든去來는 제외된다. 또한 非居住者的 國內에서의 支出(예를 들면, 國際觀光, 航空 및 港灣 手數料)은 제외되는데 이는 엄격히 말해 관현 서비스가 國境을 넘나들어 공급되지 않는다.

(2) 非交易 서비스를 包含한 定義

이러한 서비스貿易의 定義는 一國內의 外國人뿐만 아니라 外國에서의 國內居住者에 의해 消費된 '非交易'서비스를 포함하여 定義하지만 실제 輸出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방식에 의해 定義된 서비스貿易 즉, 狹義의 定義에 더하여 非交易서비스의 國際去來는 民間 非要素 서비스(private non-factor services)의去來를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들 중 주요한 것은 觀光客과 비즈니스 맨에 의한 旅行支出과 港灣 및 航空 手數料 등이다.

(3) 非要素(non-factor)서비스를 包含한 定義

지금까지는 政府에 의한 서비스輸出入은 고려하지 않았다. 政府 서비스去來는 海外에 外交的, 軍事的 目的에 의한 支出을 包含하며, 軍事的 販賣契約에 의한 裝備, 供給品, 物資 등의去來를 政府 서비스去來에 包含시키기도 한다. 이를 項目은 本質的으로 서비스적 要素를 包含하고 있지만 商品計定에 包含시키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

(4) 要素 서비스를 包含한 定義

概念的으로 가장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는 國內企業의 海外支社와 外國企

10) UNCTAD, Production and Trade in Service : Policies and their underlying factors bearing upon international service transactions, United Nations, New York, 1985, pp.20~22.

業의 國內支社에 의한 서비스活動이다. 이 문제의 解決은 보다 정확한 서비스의 國際去來測定을 위해 중요하다.

서비스貿易에 대한 國際協定으로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을 들 수 있다.¹¹⁾ 이는 우루파이라운드에 와서 구체적으로 시도되고 또한 結實을 보게 되었다.

그 이전에는 個別 서비스 分野별로 양자간 또는 다자간협정을 맺거나, 서비스교역보다는 경상무역외거래 자유화라는 이름으로 규율되거나 또는 商品貿易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補助手段 등으로 취급되었다.

개별 서비스분야별 양자협정의 대표적 예로는 航空協定, 海運協定을 들 수 있으며, 한 서비스분야의 다자간협정으로서 대표적인 것은 UNCTAD에서 제정한 ‘定期船 同盟 行動規範에 관한 UN協定’(UN Convention on a Code of Conduct for Liner Conference)을 들 수 있다.

1962년 12월에 제정된 OECD ‘經常貿易外 去來自由化規約’(The Code of Liberalization of Current Invisible Operation)은 居住者와 非居住者間의 國際無形去來를 自由化하기 위한 것으로서 運送, 保險, 印畫, 觀光, 廣告 등 주요서비스분야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投資收益, 特許 또는 商品使用料, 公共支出 등 서비스 외적인 것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비스貿易(trade in service)이라는 개념에 기초하고 있지도 않았다. 또한 기본적으로 규약적용대상 去來形態도 國境間 無形去來에 한정되어 있고 GATS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商業的駐在 즉 外國人投資에 의한 서비스交易이나 自然人の 移動에 의한 서비스貿易은 아니다.

물론 OECD 兩大 規約의 다른 하나인 ‘資本移動의 自由化에 관한 協定’(The Code of Liberalization of Capital Movement)은 外國人投資 自由化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서비스產業의 外國人 直接投資 뿐 아니라 製造業分野의 外國人 直接投資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外國人 直接投資 뿐 아니라 間接投資도 包括하므로 外國人投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國際協定이다.

1970年代 以前까지는 서비스가 貿易(trade)概念으로 파악되지 않았으며 分野別로, 地域別로 또는 國家 그룹 別로 다루어져 왔다.

11)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GATS)은 WTO가 관할하는 附屬協定인 Annex 1A, Annex 1B, Annex 1C, Annex 1D, Annex 1E, Annex 1F로 구성되는 6 가지 附屬協定 중 Annex 1B에 속하는 協定으로서, 서비스 協定에 관해서는 서비스 理事會(Council for Trade in Service)가 담당한다.

그러나 1950年代부터 1970年代에 걸쳐 先進國經濟가 서비스經濟(the service economy)로 이행하는 構造調整을 겪게 됨에 따라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게 되었다. 즉 서비스부문이 先進國들의 경우 GDP의 60%를 상회하게 되고 이러한 양적인 성장과 아울러 情報通信, 金融 등 經濟의 下部構造 서비스(infrastructure services)의 戰略的 重要性이 크게 부각되면서 서비스산업 규제가 個別國家의 國內問題가 아닌 國際問題로 取扱되기 시작했다.¹²⁾

서비스 貿易¹³⁾이 國際通算問題로 取扱되고 또 이에 관한 多者間協定이 制定되게 된 데에는 서비스 經濟學者들의 공이 커다. 이들은 서비스 貿易에 관한 수 많은 論文과 研究書籍을 發表하는 한편, 政府官僚와의 세미나, 意見交換 등을 통하여 각국의 상이한 규제체계하에 있던 서비스분야를 trade 概念下에 共通點을 추출하여 多者間規律을 制定하여야 한다는 問題를 提起하였다. 이러한 專門家들의 問題提起는 美國의 利害關係와 맞아 美國政府에 의해 國際舞臺에서 政府次元의 問題로 공식 논의되게 되었고, 결국 우루파이라운드를 통하여 서비스貿易에 관한 一般協定으로 結實을 맺게 되었다.

2. 서비스 貿易의 類型

서비스의 國際間 移動은 다양한 방법에 의해 去來된다. 이러한 서비스 貿易의 形態에 대하여 學者에 따라 다르게 分類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바그와티의 分類

바그와티(J.N. Bhagwati)는 서비스 특성간의 상호작용에 따라 서비스의 類型을 크게 두가지로 區分하였다.¹⁴⁾ 즉, 서비스 生產者와 消費者의 物理的 接近

12) 國際間 去來對象物에 따른 國際協定을 보면, 國際商品移動의 경우는 商品貿易의 自由化가 목표로서 WTO가, 서비스의 國境間 移動에 따른 서비스貿易의 自由화는 GATS가, 貨幣에 대한 經常貿易去來의 결제는 外換自由化가 목표로서 IMF가, 資本去來에 대한 資本自由화는 OECD가 관할하고 있다.

13) 서비스무역에 대한 국제협약으로서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약(GATS :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이 있는바, 이 협약은 WTO가 관할하는 부속협약인 Annex 1A, Annex 1B, Annex 1C, Annex 12, Annex 13, Annex 14로 구성되는 6 가지 부속협약 중 Annex 1B에 속하는 협약으로서, 서비스협약에 관해서는 서비스 이사회(Council for Trade in Service)가 담당한다.

14) J.N. Bhagwati, "Trade in Service and the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1, No.4, 1987, pp.8~12.

性(physical proximity)을 필요로 한 경우와 필요하지 않는 경우의 2 가지로 分類하고 있다.

① 物理的 接近性이 必要한 서비스

生産者 移動, 消費者 不移動(mobil provider, immobile user)型 서비스는 서비스 生產者의 移動은 필요로 하나 서비스 消費者的 移動은 필요로 하지 않는 形態로서 바그와티는 이를 ‘一時的要素再配置’서비스라고 부르고, 勞動者의 海外建設工事進出 등이 그 예이다. 서비스 消費者的 移動은 필요로 하나 서비스 生產者의 移動은 필요치 않은 形態로서, 留學生의 海外留學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消費者 移動, 生產者 移動(mobile user, mobile provider)型 서비스는 서비스 生產者와 消費者의 移動을 필요로 하는 形態로서, 患者와 醫師가 第3國에서 手術하는 경우를 그 예로 들 수 있으나 그다지 흔한 경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② 物理的 接近性이 不必要한 서비스

이 類型은 서비스 生產者와 消費者間의 物理的 接近性이 꼭 필요치 않는 경우로서, ‘遠距離 서비스(long-distance service)’라고도 한다. 이 形態는 서비스 生產者와 消費者의 物理的 接近性은 有用하지만 필요하지는 않은 경우이다. 이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金融·保險서비스, 通信을 이용한 디자인이나 情報서비스 등으로 오늘날 技術의 발달에 따라 遠距離 서비스는 아주 增加되고 있다.¹⁵⁾

(2) 스턴 및 호크만의 分類

스턴과 호크만은 서비스 生產者와 消費者의 國境間 移動이 필요한지의 여부에 따라서 네가지 類型으로 區分하고 있는데,¹⁶⁾ 이같은 分類方法은 힌들리(Hindley), 샘슨과 스나프(Sampson and Snape), 그루벨(Grubel), 페케테쿠티(Feketekuty), 리들(Riddle)¹⁷⁾ 및 사자나미와 우라다((佐佐波楊子, 浦田秀次郎)도 역시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① 生產者 또는 消費者の 不移動(no movement of providers or demanders)

15) M. G. Quibria, *Service trade and asian developing economies*, Asian Development Bank Economics Staff Paper Series, No.44, October 1989, pp.6~7.

16) R.M. Stern and B.M. Hoekman, *Conceptual issues relating to servic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Pacific and World Studies, No.1, 1988, pp.10~11.

17) D.I. Riddle, *The role of the service sector in world development*, Praeger(N.Y.), 1986, pp.12~13.

은 '分離된 서비스(separated services)'라고도 하며 바그와티의 '遠距離 서비스'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類型은 財貨와 같은 방식으로 去來가 이루어지는 한 '純粹한' 또는 '獨立的인' 서비스 貿易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財貨貿易의 보완적 역할을 한다. 이 유형은 電氣通信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의 제공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② 生產者만의 移動(movement of providers only)은 '消費者 중심 서비스 (demander-located services)'이라고도 하며, 이 경우에 物理的 接近性이 必要條件이며 資本·勞動 등 產業要素의 國際的 移動이 不可缺한 서비스이며, 이의 供給을 위해서는 外國人直接投資나 現地駐在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③ 消費者만의 移動(movement of demanders only)은 '生產者 中心서비스 (provider-located service)'이라고 하며, 서비스는 生產者가 위치한 國家에서 提供되므로 消費者의 物理的 移動이 필요한 경우로서 旅行, 教育, 醫療 서비스, 外國港에서 船舶이 서비스를 받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④ 生產者 및 消費者의 移動(movement of providers and demanders)은 '分離되지 않은 서비스(footloose, non-separated services)'라고도 하며 理論의 完成을 위해 포함된 형태이다. 즉, 서비스 生產者와 消費者가 第3國으로 移動하여 그 곳에서 서비스가 수행되고 구매되는 경우이다.

(3) WTO協定上에 따른 分類

① 國境間 供給(cross-border supply)은 서비스 生產者가 서비스 輸入國內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비스 供給을 말한다. 즉, 서비스 供給主體가 서비스 輸出國內에 그대로 駐在하면서 서비스를 生產하여 生產된 서비스 製品을 서비스 輸入國에 搬出하는 경우로서 資本이나 勞動과 같은 生產要素의 移動이 隨伴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전형적인 예로서 通信手段에 의한 서비스 供給과 商品에 具現된 서비스 供給을 들 수 있다.¹⁸⁾

② 海外消費(consumption abroad)는 서비스 消費者가 서비스 輸出國 領土內에서 서비스를 購買·消費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서비스 消費者는 自

18) 通信手段에 의한 서비스 供給의 예로는 通信士와 新聞社 間의 뉴스전송, 위성에 의한 國家間 케이블방송, 팩시밀리나 우편에 의한 法律諮詢 등을 들 수 있고, 商品에 具現된 서비스 供給의 예로는 컴퓨터 디스크에 내장된 각종 프로그래밍 서비스, 書籍 또는 圖面에 具現된 設計서비스 등을 들 수 있다.

然人과 自然人이 所有하고 있는 所有物을 포함한다. 이에는 觀光關聯 서비스, 教育 서비스, 醫療 서비스 및 航空機, 船舶 등이 海外現地에서 수선·유지 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③ 商業的 駐在(commercial presence)는 外國企業이 모든 형태의 事業體를 서비스 輸入國內에 창설하여 營業活動을 영위하는 경우와 外國企業이 間接投資로 기존 企業의 引受를 통해 支社와 代表事務所를 新規設置하여 運營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④ 自然人の 駐在(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외국서비스 공급기업의 支社, 子會社 등의 임·직원의 現地駐在에 의한 서비스공급, 회계사엔지니아 등의 개별 서비스 生產者가 서비스 輸入國內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UR 서비스協定上의 서비스貿易의 分類方法은 바그와티 및 스턴과 호크만의 分類方法과 類似함을 알 수 있다. 즉, 서비스貿易을 서비스 生產者의 駐在與否에 따라 4 가지 形態로 分類하고 있지만 生產者와 消費者 모두 移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差異點이 없다. 그러나 실제 生產者 및 消費者가 모두 移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差異點이 없다. 그러나 실제 生產者 및 消費者가 모두 移動하는 경우는 이론적 완성을 위해 분류된 것이며 또한 서비스協商에서 제외되고 있다.

(4) 課稅價格을 中心으로 한 分類

이는 國際去來에서 去來商品에 대한 課稅價格賦課를 基準으로 하여 分類한 것으로서 商品과 관련된 서비스貿易과 서비스去來를 중심으로 分類한 것이다.¹⁹⁾

本論文에서는 課稅價格²⁰⁾을 中心으로 한 分類를 中心으로 檢討하겠다.

① 商品에서 分離된 서비스貿易

商品貿易에서 分離된 여러 가지 形態의 서비스가 생겨나고 이들에 대한 서

19) J.N. Bhagwati, "Why are services cheaper in poor countries?", *Economic Journal*, Vol.94, 1984, pp.279~286 및 A. Deardorff, "The general validity of the law of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8, 1980, pp.941~957 즉, J.N. Bhagwati의 具現(embodyment)과 分離(splitting)를 基準으로 하여, A. Deardorff의 不在生產要素論을 基礎하여, 關稅가 賦課되는 부문과 非關稅對象의 領域으로 나누는 方式을 택하여 關稅價格政策이 容易하도록 4 가지로 分類한 것이다.

20) 本論文에서는 課稅基準과 課稅價格(customs value)을 구분하지 않고同一한 概念으로 混用하여 使用키로 한다.

비스 代價가 보상으로 發生하는 代價支給이 購買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 新評價協定 第8條에서 商品의 課稅價格에 加算(additions to price)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여기에는 手數料 및 仲介料(commissions and brokerage), 容器 및 包裝(container and packing), 支援(assists), 로얄티 및 라이센스 料(royalties and licence fees)(여기에는 商標權, 特許權, 노하우, 著作權이 包含됨) 등이 이 범주에 包含된다.

手數料와 仲介料의 경우는 購買手數料는 課稅標準에 加算토록 規定하고 있다.²¹⁾ 購買手數料의 概念은 販賣手數料와 구분되는 概念이다. 購買手數料라는 용어는 輸入者가 輸入商品을 購買할 때에 海外에서 그를 대리하여 행하는 용역의 代價로 그의 代理人에게 支給하는 費用을 의미한다고 解釋하고 있다. 구체적인 事項은 다음 章에서 다루기로 한다.

容器 및 包裝(container and packing)은 課稅標準에 加算되는 경우를 첫째 關稅 目的上 當該 物品과 一體로 取扱되는 容器 費用과 包裝에 소요되는 勞務費 및 資材費라고 規定하고 있다.²²⁾

支援(assists)은 國際間의 商品貿易에서 購買者가 그의 公동자에게 여러 形態의 支援을 하는 경우가 있다. 購買者와 生產者가 直去來하는 경우는 더욱 더 흔하다. WTO 協定에서는 輸入物品의 生產 및 輸出販賣와 關聯하여 使用하도록 購買者가 無料 또는 引下된 價格으로 直接 또는 間接的으로 提供한 物品 및 用役이다.²³⁾

- 21)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 there shall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
 - a) the following, to the extent that they are incurred by the buyer but are not included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 i) Commissions and brokerage, except buying commissions: Agreement on the implementation of Article VII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he tariffs and trade 1994.
- 22)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under the provisions of Article 1, there shall be added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imported goods :
 - a) the following, to the extent that they are incurred by the buyer but are not included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for the goods :
 - ii) the cost of containers which are treated ad being one for customs purposes with the goods in question;
 - iii) the cost of packing whether for labour or materials;
- 23) the value, apportioned as appropriate, of the following goods and services where suppli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buyer free of charge or the imported goods, to the extent that such value had not been included in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Agreement Article VII).

物品과 用役은 輸入國에서 發生된 것이어야 하는 必要事項은 아니다. 단지 그것이 어디에서 發生된 것이냐가 아니고 購買者에 의하여 提供된 사실이 實際의로 重要한 事項이다. 아울러 購買者가 스스로 만들었거나 소요할 必要는 없는 것이다. 또한 支援은 輸入物品의 生產 또는 輸出版賣와 關聯된 것이어야 하고 그 價格은 課稅標準에 包含되지 않는다.

輸入物品에 결합되는 製品, 構成要素, 部分品 및 이와 類似한 物品²⁴⁾으로서 이는 有形의 物品을 말한다.

아울러 輸入物品에 生產되는 工具, 다이스, 모울드 및 이와 類似한 物品으로서 이는 使用에 提供된 그 정도만큼 배분되어 課稅標準에 加算된다. 그리고 輸入國 外部에서 수행되었으며 輸入物品의 生產에 必要한 技術, 開放, 藝術的 創作, 考案 및 設計가 加算된다.²⁵⁾

로얄티 및 라이센스 料(royalties and licence fees)²⁶⁾는 輸入物品의 價格이 去來商品價格에 包含되지 않은 경우 權利에 대한 支給額인 로얄티나 라이센스 料가 輸入商品 去來價格에 어떻게 計上되어야 하며, 아울러 包含 與否의 시비가 일어나고 있다. 新評價協定에서는 評價物品에 關聯된 로얄티 및 라이센스 料 중 評價對象物品의 販賣條件으로서 購買者가 直接 또는 間接의로 支給하도록 되어 있지만 支給하였거나 支給하여야 할 價格에 包含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다.²⁷⁾

② 商品去來에 隨伴하는 서비스 貿易

이는 商品貿易이 아니고 이에 부수되는 金融, 運送, 保險서비스가 課稅標準으로서의 概念에 包含되는 要素로서 檢討되는 것이다. 여기서는 課稅되는 規律과 課稅要因이 동시에 内재되어 있어 WTO 協定에 이에 대한 根據가 設定되어 있다.

먼저 金融消費問題이다. 여기에는 物品去來關聯 利子費用, 確認手數料, 팩토

24) materials, components, parts and similar items incorporated in the imported goods(Agreement Article 8. 1. (b) (i)).

25) engineering, development, artwork, designwork and plans and sketches undertaken elsewhere than in the country of importation and necessary for the production of the imported goods(Agreement Article 8. 7. (b) (iv)).

26) 로얄티 및 라이센스 料의 用語는 新評價協定 및 註解에서는 항상 같은 概念으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에 대한 구분된 定義는 없다. 이 用語는 情報 또는 서비스 와 같은 無形의 것 또는 權利, 特許權 등의 使用權의 代價로 간주된다.

27) royalties and licence fee related to the goods being valued that the buyer must pay,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as a condition of sale of the goods being valued, to the extent that such royalties and fees are not included in the price actually or payable(Agreement Article 8. 1. (c)).

링手數料 등의 其他費用이 나타난다.

運送關聯費用은 協定에서 輸入港 또는 輸入地點까지의 輸入國 運送費用과 輸入港 또는 輸入地點까지의 輸入品運送과 關聯되는 積荷費, 양하비 및 荷役費 등은 각 회원국은 이들의 一部 또는 全部를 課稅標準에 包含시킬지 與否를 자 기나라의 自國法에 위임하였다.²⁸⁾

CIF를 適用하는 國家에서는 運送費用(cost of transport)은 購買者가 支給해야하는 輸入地點까지 實際 發生한 運送費用은 이것을 送狀價格에 包含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 價格을 課稅標準으로 包含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輸出國 內의 積荷地點에서 輸入地까지의 物品의 이동에 의해 直接 發生하는 모든 費用이 包含된다.

즉, 조기인도, 특수한 규격이나 무게나 위험에 대한 追加運送費(freight surcharge)과 forwarding agent나 중개자에 대한 手數料나 費用 및 港灣 또는 空港使用費(feeds)와 運送手段(carrier)이 바뀌어질 때의 臨時倉庫料와 컨테이너 包裝 등을 위한 貨貨料 및 이에 부수되는 包裝關聯費用 등이 課稅標準으로서 加算된다. 그러나 CIF體系下에서 當事者는 課稅價格에 追加的인 費用要素를 자유로이 包含시킬 수 없다.²⁹⁾

保險費用(cost of insurance)은 輸入地까지의 運送에 따른 滅失 또는 損傷를 擔保(cover)하는 것과 關聯이 된 것이며, 이에 關聯된 전반적인 事項은 각 國의 國內 法規에 따른다.³⁰⁾

③ 서비스가 具現(embodyment)된 商品去來

서비스가 具現된 商品이 最終消費者에게 전달되는 商品과 生產 또는 복제의 中間段階로 투입되는 商品으로 分類될 수 있다. 最終消費者에게 販賣되기 위한 商品은 서비스가 단순히 具現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 部門이 工業生產의 과정(때로는 복제과정)을 거치게 되어 商品의 領域으로 變化된

-
- 28) In framing its legislation, each Member shall provide for the inclusion in or the exclusion from the customs value, in whole or in part, of the following;
 - a) The cost of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 b) loading, unloading and handling charges associated with the transport of the imported goods to the port or place of importation. Agreement Article 8. 2. (a) (b)
 - 29) No additions shall be made to the price actually paid or payable in determining the customs value except as provided in this Article(Agreement Article 8. 4.).
 - 30) In framing its legislation, each Member shall provide for the inclusion in or exclusion from each customs value, in whole or in part, of following c) the cost of insurance(Agreement Article 8. 2. (c)).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小賣包裝의 音盤, 테이프, CD 등이 있다.

生產 또는 複製의 中間段階에 투입되는 商品으로는 著作權의 對象³¹⁾이 되는 것과 產業分野의 用役成果物이 담겨있는 商品으로 分類된다. 著作權의 對象物에는 設計圖, 熱火 필름, 寫眞 필름, 書籍, 繪畫, 彫刻 등이 있으며 產業分野의 用役成果物에는 plan & sketch, design, phototype³²⁾, S/W 등이 있다. 따라서商品의 성격에 따라서 각기 다른 課稅價格의 設定이 必要하다.

④ 서비스貿易에 隨伴하는 商品去來

여기에는 서비스의 生產者 移動에 따른 商品貿易과 서비스의 消費者 移動에 따른 商品貿易로 나눌 수 있다.

서비스의 生產者 移動에 따른 商品貿易으로는 주로 輸入 後 일정기간 후에 다시 輸出하는 것을 條件으로 關稅를 면제하는 등이 이 규범에 속한다. 여기에는 展示會, 博覽會, 會議 또는 이와 類似한 행사에 展示 또는 使用될 物品과 特定職業用具로써 再搬出을 條件으로 하는 경우, 그리고 商業活動과 關聯하여 輸入되는 컨테이너, 팔릿(pallets), 包裝(packing), 見本(samples) 및 기타 물건과 여행자의 개인용품 및 스포츠 目的으로 輸入되는 物品 등이다. 改正 교오도協定의 個別附屬書 G는 一時輸入(temporary admission)에 관한 基本協定³³⁾이 있다.

서비스의 消費者移動에 따른 商品貿易으로서는 대표적인 경우가 觀光, 旅行 서비스가 이 경우이다. 觀光, 旅行目的의 旅行者 携帶品은 旅行地에서 편의상 購買하게 되는 携帶品, 이를 기념하고자 하는 紀念品 및 旅行에 따른 선물을 購入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 旅行書類를 지출하게되고 이는 서비스 部門에 대한 지출로 計上된다.³⁴⁾

31) 書籍物, 畵畫著作物, 美術, 寫眞著作品, 圖解, 地圖, 設計圖, 스케치 등 모든 著作物을 包含한다. 배른 協定 第1條1(文學, 藝術的 著作物 保護規定임)

32) 디자인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각종 소재로서 목형을 만들어 본 경우나 工業生産品을 推發하여 그 機能의 特성이 具現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사제품을 만든 경우로 特징됨.

33) 物品의 일시수입을 위한 一時輸入通關證書에 관한 關稅協定(ATA協定; Customs convention on the A.T.A carnet for temporary admission of goods)이라고 하고 하고 A.T.A 까르네(Admission temporary admission carnet)協定이라고도 한다. 이 協定은 1961. 12. 6. Brussels에서 作成되고, 韓國은 1978. 7. 3.에 加入하였다. 이는 職業用具의 一時輸入 및 展示會, 博覽會, 會議 기타 이와 類似한 행사에서의 展示 또는 사용될 物品의 輸入上의 便宜에 관한 關稅協定으로서 證書發給 後 1年間의 有效期間을 두고 있다.

34) IMF 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 statistic Annual Report, 1998.

또한 시험 및 수리를 目的으로 이를 하게 되는 商品貿易이다. 海外에서 製造 및 수리 후 輸入國에서 使用할 目的으로 新造된 物品에 대하여는 각 국의 立法 內容에 따라서 關稅 等 輸入課稅를 全額免除하는 경우가 있다.

改正 교오토 協定 附屬書에는 보다 구체화되어 있는 바, 관세권역 내에서 자유로이 유통되는 物品이 海外에서 製造, 加工 및 修理를 目的으로 일시적으로 輸出되고 輸入者稅가 전부 또는 部分免除로 再輸入되는 稅關節次³⁵⁾로 規定되어 있다.

IV. 結論

國際 서비스 貿易에 대한 紹介에 그쳤으나, 이와 關聯하여 國家間에 發生하는 問題는 상당히 多樣하다. 특히 貿易去來에서 발생하는 課稅基準에 대하여는 課稅價格을 中心으로 한 分類에서 4 가지로 區分, 紹介하고 있으나, 課稅基準의 설정면에서 體系的인 접근전략이 부족하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것을豫見하고, 단지 서비스貿易에 대한 概念紹介에 그치고, 다음 기회에 그具體的인 問題性을 提示하고자 한다.

35) 稅關節次簡素化 및 調和에 관한 國際協定(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Simplification and Harmonization of Customs Procedereurs)은 1973. 5. 18. 교토에서 作成되었고, 韓國은 1983. 10. 15. 加入하였다(교토 協定이라고 한다). 여기에서는 10 가지의 附屬書로 구성되고, 그 하나가 再輸入節次에 관한 附屬書이다. 韓國은 여기에 1990. 8. 9. 加入하였다.

參 考 文 獻

- 對外經濟政策研究院, UR總點檢, 1993.
- 박명섭 譯, 사자나미요오코/우라다슈지로, 서비스貿易-理論·現象·課題-, 比峰出版社, 1993.
- 徐東均, 韓國서비스貿易의 構造와 比較優位決定要因에 關한 實證的 研究, 東亞大學校大學院 博士學位論文, 1997.
- 羽田昇史, サービス經濟學入門, 同文館, 1993.
- Bhagwati. J.N., "Trade in service and the multinational trade negotiations,"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Vol.1, No.4, 1987.
- Bhagwati. J.N., "Why are services cheaper in poor countries?", *Economic Journal*, Vol.94, 1984.
- Deardorff. A., "The general validity of the law of comparative advantag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88, 1980.
- Elfring. T., "New Evidence on the Expansion of Service Employment in Advanced Economi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35, 1989.
- Feketekuty. G.,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3, 1977.
- Grubel. H. and Walker. M.A., *Services in World Economic Growth*, Tübingen: Kiel University, 1989.
- Hill. T.P., "On Goods and Service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23, 1977.
- IMF Committee on Balance of payment statistic Annual Report, 1998.
- Quibria. M. G., *Service trade and asian developing economies*, Asian Development Bank Economics Staff Paper Series, No.44, October 1989.
- Riddle. D.I., "Service-Led Growth," *Journal of Marketing*, vol.41, 1987.
- Riddle. D.I., *The role of the service sector in world development*, Praeger(N.Y.), 1986.
- Sapir. A., "North-South Issues in Trade in Services," *The World Economy*, 1985.
- Stern. R.M. and Hoekman. B.M., "Conceptual issues relating to service in the international economy," *Pacific and World Studies*, No.1, 1988.
- Stern. R.M. and Hoekman. B.M., "Issues and Data Needs for GATT Negotiations on Services," *The World Economy*, Vol. 10, No.1, 1987.
- UNCTAD, *Production and Trade in Service: Policies and their underlying factors bearing upon international service transactions*, United Nations, New York, 1985.

ABSTRACT

Service Trade and its Patterns

Kim, Woo Kyu

As volume of international trade is growing importance for service business and service trade are also increasing.

Increasing importance of service trade in Korea is also a reflection of such international trading.

In this treatise this writer did not address various topics in relation to international trade arising from service trade. But confined the topic to study of concept of service and concept and patterns of service trade.

Depending on scholars concept of service may be varied and this holds true also with concept of service trade which also lends itself to various classification.

Among them if the focus is concentrated to tax standard in international trade then it can be classified into service transaction.

In other words classification can be made according to service trade separated from commodities transaction with embodiment of service and service trade accompanying commodities transaction.

In this treatise this writer confined the topic to introduction of international service trade but issues arising in relation to such trade internationally are varied. For this reason more study on such topics will be required in future.

Key Words : Service trade,